



보 도 자 료

다시,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2. 13. (화) 국무회의 시작(10:00) 이후	배포 일시	2022. 12. 12. (월)		
담당 부서	공공보건정책관 혈액장기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정숙	044-202-2630
		담당자	사무관	강명진	044-202-2631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

-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추모 사업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 -

□ 보건복지부는 「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이 12월 13일(화)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는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사업을 장기구득기관*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.

*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, 장기 등 기증 설득 및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개소 운영중

□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.

○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유일의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추모 및 기념행사, 유족 상담, 장례 지원 등 예우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됨으로써

○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한층 더 강화된 예우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.

□ 보건복지부 박항 공공보건정책관은 “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는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, 이를 통해 장기 기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라고 말하면서,



- “앞으로,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해 다양한 예우사업을 발굴하여 지속 지원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- 아울러, 지방자치단체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추모 및 예우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<별첨>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